

##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10. 21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호, 2021. 10. 21., 제정]

제1조(목적)

제2조(온실가스 감축 기술)

제3조(기후변화 적응 기술)



##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10. 21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호, 2021. 10. 21., 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원천기술과) 044-202-451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온실가스 감축 기술)** ①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가목에서 “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.

1.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
  2.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·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·운송·활용하는 기술
  3. 에너지의 생산·저장·전달·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
  4. 온실가스를 포집(捕執)·저장·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
 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·저장·전달·소비하는 기술
  6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3조(기후변화 적응 기술)**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“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.

1.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·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
 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·분석·진단하는 기술
    - 가.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, 생활환경 등 사회·경제·환경에 미치는 긍정적·부정적 영향
    - 나.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
  3.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
  4.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·평가하는 기술
  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부칙** <제80호, 2021. 10. 21.>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